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. 20 선고 2021나1331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---

### 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. 20 선고 2021나13317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. 29 선고 2019가단5138576 판결

### 전문

원고,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

피고, 항소인 C

변론종결 2021. 12. 14.

판결선고 2022. 1. 20.

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. 29. 선고 2019가단5138576 판결

### 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### 1. 청구취지

제1심 공동피고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1, 2, 3항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304/827 지분에 관하여 2018. 11. 1. 체결된 매매계약을 28,707,53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,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D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,707,5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# 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## 이 유

### 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(다만,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, B에 대한 금전지급 청구 부분은 제외).

### 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   판사 최은주, 판사 정 원, 판사 김유성

별지